

2023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공고

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39조 및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, 제81조에 의거하여, 경유차의 도심지 인구 밀집지역 운행으로 인한 미세먼지 및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생계형 화물차 차주의 신차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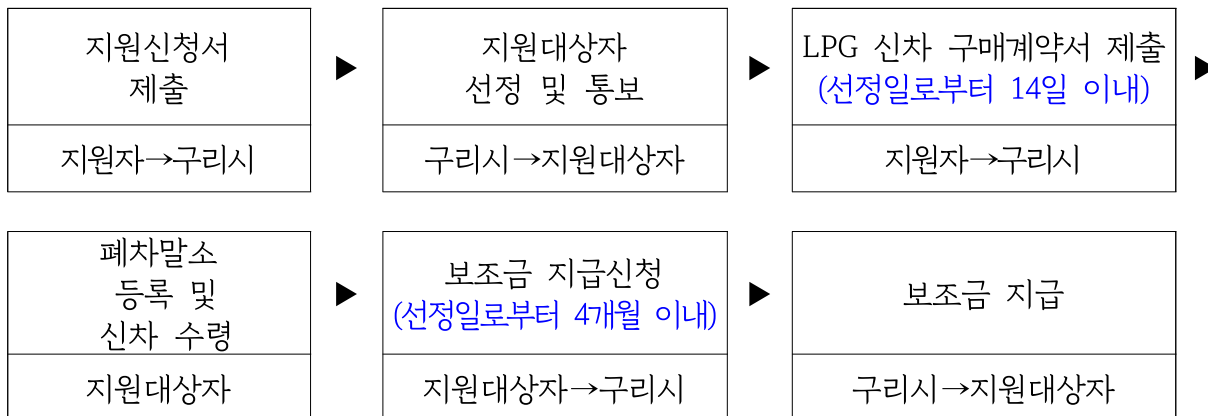
2023. 2. 17
구 리 시 장

1. 사업개요

- 사업내용 :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로의 신차 구입비용 지원
- 신청기간 : 2023. 3. 2.(목) ~ 12. 1.
 - ※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,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 및 사업량은 변동될 수 있음
- 사업량 : 15대(15,000천원)
- 지원대상 : 사용본거지가 구리시인 경유차¹⁾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²⁾를 신차로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
 -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를 우선적으로 지원
 - 저공해조치(매연저감장치 부착)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(2년)이 지난 경우에 한함
 - ※ 조기폐차를 포함한 자진말소 가능(수출말소 및 차령초과말소 제외)
 - ※ 같은 날 접수 시 조기폐차한 차량을 우선적으로 지원 가능
 - ※ '22. 11 1 이후 구매등록 또는 폐차말소(자진말소)를 행한 경우 보조금 신청 가능
- 지원금액 : 1대당 100만원

1) 경유를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 및 도로형 3종 건설기계(덤프트럭, 콘크리트 믹서 및 콘크리트 펌프카)
2)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.5톤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

○ 지원절차



2.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

- 지원신청 기간 : 2023. 3. 2.(목) ~ 12. 1.(금)
- 접수방법 :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 또는 우편접수
 - 접수처 : (우편번호:11954)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(교문동) 구리시청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 앞

○ 신청서류

- (공통서류)
 - 지원신청서^(붙임1), 자동차 등록증 사본(또는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) 사본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위탁·제공 동의서^(첨부1) 각 1부
- (개인) 신분증 사본 1부
- (법인 또는 개인사업자) 사업자등록증(또는 고유번호증) 사본 1부
- (선택)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(제출 시 우선선정 가능) 1부

3. 보조금 지급신청

- 지급신청 기간 : 2023. 3. 9.(목) ~ 12. 8.(금)
- LPG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 :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
-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: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

※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후순위로 변경될 수 있음

○ 보조금 지급신청서류

- (공통서류)

보조금 지급신청서^(붙임2),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사본, 자동차 등록증 사본, 본인(법인) 명의 통장 사본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위탁·제공 동의서^(첨부1) 각 1부
- (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)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(신청자 본인 외)의 위임장^(첨부2) 및 인감증명서 각 1부

※ 자동차등록증상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함
(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)

○ '22. 11. 1. 이후 구매등록 또는 폐차말소(자진말소)를 행한 경우 보조금 신청 가능

※ '22. 11. 1 이전에 구매등록 또는 폐차말소를 행한 경우는 신청 불가

4. 보조금 지급

○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까지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 보조금을 지급

※ 제출한 서류에 보완 또는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보완을 요청한 날로부터 보완이 완료된 날까지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함

○ 보조금은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자 명의의 본인 계좌로 지급

○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더라도 보조금 지급 청구서 마감기한 내 구비서류 미비 없이 청구서 제출이 이루어져야만 보조금 지급 가능

※ 신차 출고 지연으로 인해 청구서 마감 기한 내에 차량 출고 및 청구서 제출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하므로, 가급적 신차 출고 전 기존 보유차량을 미리 폐차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. 신차출고 지연 사유서 제출 시, 청구기간 연장 가능

5. 기타사항

○ 지원대상자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

-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을 취소하고,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

(단, 자동차 제작사의 귀책 사유로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지는 제외함)

- 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
- ㉡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
- ㉢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

※ 보조금 및 이자는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, 마이행 시「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의해 강제징수됨

-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필요시 원본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.
- 보조금을 지급받은 LPG 화물차 구매자는 「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」 제79조의4 제1항에 따라 신차의 최초 등록일자 시점부터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
 - ※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을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전액 또는 운행 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,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「2023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」에 따름

6. 문의처

- 구리시청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 ☎031-550-2329
- (조기폐차 문의) 한국자동차환경협회 ☎1577-7121
- (LPG 화물차 신차구입 사업 문의) 대한LPG협회 ☎1833-6501

- 붙임 1.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1부.
 2.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.
 3. [첨부1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위탁·제공 동의서 1부.
 3. [첨부2] 위임장 1부. 끝.

